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포용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관련 규정에 디지털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나.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

다. 정보화교육 수강료 감면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8조)

라. 그 밖에 관련 규정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표현을 정비함
(안 제6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및 제20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10. 6. ~ 2026. 10. 12. (7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147-3662, FAX: 2147-3956, e-mail: khjjj@songp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 (www.songpa.go.kr)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www.council.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